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가단51930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무사

담당변호사 이진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현섭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19. 11. 18.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20,362,4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362,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19. 11. 18.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27,341,3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341,36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E은 D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있었다.

- 2019. 1. 2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4486【D은 주식회사 E에게 12,331,918원 및 위 금액 중 10,804,460원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019. 6. 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51592【D은 주식회사 E에게 14,315,407원 및 위 금액 중 11,422,446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2020. 2. 26. 위 가.항 주식회사 E의 피고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수받았고,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20. 7. 22. 기준으로 1번 채권액의 원리금 잔액은 12,991,680원(원금 10,804,460원), 2번 채권액의 원리금 잔액은 14,349,689원(원금 11,422,446원)이다.

라. 1) 피고와 D의 아버지인 F이 2019. 11.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 피고, G, H, D이 있다.

2) 위 상속인들은 2019.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9. 12. 26. 접수 제1135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6.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66,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2019년 당시 조세채무 30,000,000원 등 약 407,61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D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한 것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D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비용으로 신축하였거나, 피고가 F을 부양하는 등 기여분이 있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선의라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 선의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가액배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2020. 7. 22. 기준으로 27,341,369원이고(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금액을 상회함은 당연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해행위 무렵 및 현재 시가가 81,449,700원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D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20,362,425원($= 81,449,700\text{원} \times 1/4$, 원 미만 버림)이고,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D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이다. 결국, 위 각 금액 중 최소 금액인 20,362,425원이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라. 소결론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이 20,362,425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0,362,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별지목록**부동산의 표시****1. 토지의 표시**소재지번 : 충청남도 청양군

지목 : 대

면적 : 618 m²**2. 건물의 표시**소재지번 : 충청남도 청양군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독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창고 및 주택

1층 창고 167.14 m²2층 주택 84.92 m²

